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보건소에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온 분만실이 이용률 저조로 '94. 3. 24일 자로 기 폐지되었으나
- 현행 조례상에 이와 관련된 규정(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이 정비되지 않아서 금회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입원서약서) : 삭제

3.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에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온 분만실이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미 '94. 3. 24일 자로 폐지되어,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제8조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조문배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입원서약서)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보건소의 분만실을 폐지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분만실은 이미 '94. 3. 24일 자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은 응급환자 후송체계 기능보강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 및 사무조정 등 관련규칙 등이 '94. 3. 21일 자로 정비된 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방치함으로써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조례는 현존하되 사회현실을 규율하지 못하는, 즉 규범과 현실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규범과 현실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의 시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조문순서를 재배열하고 있으나, 조례안 심의의 적정성과 조례개정의 역사적 인식, 동일 내용의 조례를 적용조문을 달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 등을 감안한다면, 제9조 내지 제12조를 조문순서를 재배열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